

조합장선거 포상금 지급(법 §76)

- **지급대상** :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
- **지급금액** : 최고 3억원 이내의 금액
 -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을 방문하여, "안받으면 나 안 찍어 준다고 생각하겠다."는 취지 등의 지지호소를 하며 현금 총 2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
⇒ **포상금 1억원**
 - 후보자 및 배우자,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
⇒ **포상금 9,900만원**
 - 조합 감사 및 조합원이 조합원 등 모임참석자 17명에게 277만원 상당의 식사 및 양주 5병을 입후보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, 건배사를 통해 "조합장님 참석하셨으니 앞으로 한 번 더 재선을 해야하지 않나"라고 지지발언을 한 행위 신고
⇒ **포상금 2,000만원**

자수자에 대한 특례(법 §74)

매수 및 이해유도죄(§58)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(§59)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·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

50배 이하 과태료 부과(법 §68③)

- **부과대상** : 기부행위 금지·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·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이익을 제공받은 자(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별칙 처벌)
- **부과금액** :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(상한액 3천만원)
- **과태료 면제(또는 감경)** :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·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
 - 입후보예정자로부터 택배배송을 통해 개인별로 사과, 배 등 과일상자 1~2박스(총 610만원 상당)를 제공받은 조합원 79명
⇒ **총 3,765만원(1명당 25만원~135만원) 과태료 부과**
 - 야유회에 참석하여 입후보예정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20명
⇒ **총 2,057만원(1명당 60만원~133만원) 과태료 부과**
 -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산악회 등 친목모임 찬조금 명목으로 5만원 및 30만원을 각각 받은 조합원 2명
⇒ **총 525만원(각 75만원, 450만원) 과태료 부과**



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**최대 3억원** 지급!

※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.

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**최고 3천만원** 부과

※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

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**감경** 또는 **면제** 받을 수 있습니다.

 **법규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제보** 

 **국번없이 1390**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위반행위 신고란
- 각 지역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전화



주요 선거운동 및 금지·제한사항 안내





조합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

개요

- 선거일 : 2023. 3. 8.(수)
- 후보자 등록 : 2023. 2. 21.(화) ~ 22.(수)
- 선거운동기간 : 2023. 2. 23. ~ 3. 7.
(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)

선거운동

- 선거운동 가능자 : 후보자
- 선거운동 정의 :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-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 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 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- 선거운동 방법(대의원 선출 선거에서는 선거벽보, 명함, 어깨띠·윗옷·소품 제외)
 - 선거공보, 선거벽보
 - 정보통신망(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, 전자우편)
 - 전화[직접통화, 문자(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은 제외)], 명함, 어깨띠·윗옷·소품
 -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(총회 및 대의원회 선출 선거 해당)

•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, 선거운동 주체도 ‘후보자’로 한정하고 있음.

• 따라서,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 기간중이라도 ‘후보자’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.



조합장선거 금지·제한 행위



2023. 3. 8. 실시

기부행위 금지·제한

① 주체별 제한내용(법 §35)

주체	제한기간	제한내용	비고
후보자와 그의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 ※ ‘후보자’에는 ‘후보자가 되려는 사람’을 포함함. (이하 이 표에서 같음)	’22. 9. 21. ~’23. 3. 8.	선거인(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, 이하 이 표에서 같음)이나 그 가족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(이하 ‘기부행위’라 함) 금지 ※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(이하 같음) - 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-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	§35①
누구든지	’22. 9. 21. ~’23. 3. 8.	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※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.	§35②
		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	§35③
		위 규정된 행위(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	§35④
조합장	재임 중	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	§35⑤

②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(법 §33)

- 직무상의 행위 : 법 §33①1.
- 의례적 행위 : 법 §33①2.
- 구호·자선적 행위 :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·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

기타 금지·제한 행위

구분	금지·제한 사항	비고
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	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(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, 이하 이 표에서 같음)이나 그 가족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금전·물품·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	§58
조합장의 축의·부의금품 제공 제한	•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. •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. 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	§36
조합 임·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	• 조합의 임·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• 조합의 임·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• 조합의 임·직원이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)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§31
호별방문 등 금지	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, •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§38
허위사실공표죄	• (당선목적)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. 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• (낙선목적)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. 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	§61
후보자 등 비방죄	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음. ※ 다만,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. 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§62